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심신장애 등의 표현 일괄 개정〉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3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및 검토방향	2
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3.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1
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2.
3. 회부연월일 : 2025.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감시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과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감시원이나 위원 등 또는 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검토방향

개정안은 「계량에 관한 법률」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규정된 감시원, 임원, 위원장 및 위원의 해촉·해임 등의 사유 중 ‘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내용

개정조문	규정사항	현 행	개 정	소관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항	소비자 감시원 위촉해제 사유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산업부
「무역보험법」 제48조제3호	공사임원 해임 사유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상동	산업부
「발명진흥법」 제41조의3 제1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동	특허청

개정조문		규정사항	현행	개정	소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무역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사유	신체·정신상의 장 애 등 부득이한 사 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으면	상동	산업 부
	제31조 제2호	무역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	장기간의 심신쇠약 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인정 한 경우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 신적 질환으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다 는 의사의 진단 또 는 소견이 있고 이 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현행법에서는 각종 해임·해촉 등의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조항이 장애인을 임원·위원 임명 등에서 당연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고착화시킬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해임·해촉 규정을 두는 것으로 표현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심신’의 의미는 한자 표현에 따라 정신적 측면만을 의미하는 경우(心神)와 정신적·신체적 측면을 모두 의미하는 경우(心身)로 구분될 수 있는데, 「헌법」, 「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각기 다른 한자를 병용하여 쓰고 있음.

[표 2] ‘심신’ 관련 입법례

구 분	입 법 례
심신(‘心神’)으로 표현	형법 제1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외국법자문사법 제12조 등
심신(‘心身’)으로 표현	헌법 제106조, 공무원연금법 제22조, 경찰공무원법 제50조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법령·연혁법령 재정리

그런데 「계량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현행 조문은 ‘심신’을 한자병기 없이 한글로만 규정하고 있어 ‘심신’장애가 ‘정신적’ 장애를 의미하는지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의미하는지에 명확하지 않음.

개정안은 ‘심신장애’ 표현을 모두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조문별로 종전의 한자병기 조문이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심신장애’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다음으로, 개정안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를 “의사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사가 직무수행의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님¹⁾.

[표 3] 진단서 기재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병명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법 제22조 제1항 근거)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등

소견서는 진단서와 달리 법령상 서식·작성 기준 등의 제한이 없으나, 그 내용이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진단서에 해당하게 됨²⁾.

[표 4] 소견서의 성질 및 효력

소견서에는 특별한 서식이나 기준이 없어 다른 증명서에 비해 작성 과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소견서에 상병 또는 상해와 관련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진단서나 상해진단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여 내린 의학적 판단

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판결요지】

진단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그 밖의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2) 대법원은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역시 위의 진단서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다만 입·퇴원 확인서 등과 같이 건강상태 등을 증명할 목적이 아니고 입원 여부나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진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3173 판결)

은 서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견서를 작성할 때에도 적어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른 형태의 진단서에 못지않게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자료: 진단서 작성 해설서(2023. 1., 대한의사협회 연구사업 보고서)

개정안과 같이 심신건강 상태를 증명받아 해촉·해임사유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는 목적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진단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진단서 작성 해설서」에 따르면 진단서 교부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 외에 규범적 판단을 포함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

[표 5] 진단서 작성시 규범적 판단 포함 여부

Q1: 위암 때문에 3년 전 ‘위 부분절제술(subtotal gastrectomy)’을 받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있는데 병(病) 보석(保釋)을 목적으로 진단서 교부를 요청하였다면 이를 진단서에 기재해야 하는가요?

A1: 진단서에 ‘위암 진단 후 위 부분절제술 후 상태’로 기재하고,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위 부분절제술로 위의 상당 부분을 절제한 상태이므로 식사를 소량 자주 할 것으로 판단함”이라고 기재하는 것까지는 의학적 판단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수형 생활이 불가하다”는 판단은 규범적 판단이므로 의사가 작성하는 사실확인서나 진단서에 굳이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Q2: 복통 때문에 내원한 환자가 복통으로 인해 회사 업무가 당분간 불가하다는 내용을 진단서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이를 기재해야 하는가요?

A2: 진단서에 “복통으로 인한 금식과 (며칠간의) 안정이 필요함”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이나 “회사 업무가 불가하다”는 판단은 진단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만일 수형생활이 가능한지, 회사 근무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면, 주관적인 판단임을 명시하고 의사의 개인적 소견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료: 진단서 작성 해설서(2023. 1., 대한의사협회 연구사업 보고서)

한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내용의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대부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개정하려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참고자료 참조).

그 밖에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 필요성 및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항의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해제 사유 중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4조).

[표 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 ④ (생략)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위촉된 감시원이 <u>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u>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 -----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및 시·도지사는 한국계량측정협회,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법정단위 및 계량기의 올바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정기검사·단속

업무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소비자감시원은 신분표시증표를 발급받고, 직무수행 교육 및 비용지원을 받아 활동하는데, 소비자감시원이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함.

[표 7] 시행령에 따른 해촉사유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법 제54조제5항에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
4.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이에 따라 장애인을 소비자감시원 위촉에서 당연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해촉규정 표현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대해 검토하면 우선, 현행법의 ‘심신’이라는 표현이 ‘정신적’ 측면만을 의미하는지 ‘신체적·정신적’ 측면을 의미하는지와 관련하여, 소비자감시원은 정기검사 및 단속 등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체적·정신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요구하는 등 개정안과 달리 유사한 취지·내용의 개정안들은 대부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개정하려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심신장애 등에 관한 사항만 해촉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현행 시행령 제4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해촉사유는 법적근거가 없게 됨.

개정안은 금품수수, 허위보고, 교육미이수한 소비자감시원에 대해서도 해촉사유를 삭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위임근거³⁾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⁴⁾.

마지막으로, 시행일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해촉 대상의 구체적인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는데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도 심신장애 규정 삭제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시행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위해 해당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예시: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4) 산업통상자원부도 소비자감시원 해촉사유와 관련하여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무역보험법」 제48조제3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원의 해임 사유 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8조).

[표 8]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u>	3.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무역보험법」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임원의 신분보장 예외 사유로 심신장애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도 임원에서

당연배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분보장 규정 표현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심신’의 의미와 관련하여, 종전⁵⁾의 「수출보험법」 제48조제3호⁶⁾는 공사 임원의 해임 사유를 “心身障礙로 인하여 職務遂行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不可能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문의 ‘심신장애’의 의미는 개정안과 같은 신체적·정신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요구하는 등 개정안과 달리 유사한 취지·내용의 개정안들은 대부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개정하려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5) 2009. 4. 1., 「수출보험법」은 「무역보험법」으로 제명변경됨.

6) 2007. 1. 3. 법률 제8191호

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발명진흥법」 제41조의3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표 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 -----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 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 견이 있는 경우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발명진흥법」에서는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신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장애인을 조정위원 위촉에서 당연배제하는 것으로 오해

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해촉규정 표현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임.

심신장애에 대하여 별도의 한자를 두고 있지 않아, 심신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특허청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신체장애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요구하는 동 개정안과 달리 유사한 취지·내용의 개정안들은 대부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개정하려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안은 ‘장애’ 또는 ‘심신쇠약’ 등의 표현을 대체하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 면직·해촉사유를 각각 개정하는 내용으로,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다른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면직·해촉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표 1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위원장) ① (생략) ② 위원장이 <u>신체·정신상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u>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u>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

현행	개정안
제31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31조(위원의 신분 보장)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u> 한 경우	2.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u> 한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수입 증가·덤핑·보조금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신체·정신상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을 무역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직무대행 규정 표현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임.

무역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사유(제30조제2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도 ‘신체·정신상 장애’를 함께 직무대행 사유로 정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하려는 개정안과 기준이 동일한 것으로 보임.

무역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제31조제2호)의 경우 현행 ‘심신 쇠약’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으나 제30조제2항과 유사하게 신체적·정신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요구하는 등 개정안과 달리 유사한 취지·내용의 개정안들은 대부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개정하려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6

참고

22대 국회 동일(유사) 법률안 제출 현황

의안번호	소관위	해당 법률	발의일
10002	국방위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5.4.21.
10003	법사위	검찰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증인법 변호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25.4.21.
10018	기재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한국조폐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25.4.22.
10019	교육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25.4.22.
10033	산중위	계량에 관한 법률 무역보험법 발명진흥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25.4.22.
10034	농해수위	농약관리법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25.4.22.
10035	정무위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예금자보호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5.4.22.
10037	과방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4.22.

의안번호	소관위	해당 법률	발의일
10038	문체위	도서관법	'25.4.2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액 관한 법률	
10042	행안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5.4.2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0043	환노위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4.2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